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90
------------	------

제출년월일 : 2011 · 5 ·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근거 구체화

-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 (안 제4조의2)

나.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신설

- 시의원·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자 및 종교·민간단체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외국인주민지원계획, 지역 공동사안 등 심의 (안 제7조~11조)

다. 외국인주민자문회의 신설

- 1년 이상 거주한 20인 이내의 외국인주민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지원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 자문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세계인의 날 신설

-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20일을 동두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도록 함. (안 제16조)

마.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지원범위, 조문정리 등)

-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대상) '외국인주민' →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 (범위)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추가 (안 제6조)
- 포상관련 조항 정비 (안 제18조, 표창은 지자체 포상조례로 일원화)
- 알기 쉬운 문장으로 조문 정리
 - '~이라 함은' → '이란', '않는 한' → '않으면' 등 (안 제2조, 안 제3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의 제목 “(정의)”를 “(용어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외국인”이라 함은 ”을

““외국인”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을 ““외국인주민”이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외국인 주민 가정”이라 함은 ”을 ““외국인 주민 가정”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을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않는 한”을 “않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시장”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기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제1항 중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제6조 다음에 “제2장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를 삽입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시의원,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교수·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자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업무소관 담당으로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제10조(회의) ①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 제목 “(수당 등)”을 “(위원회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위원회”를 “협의회의 회의”로 하고,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수당, 여비”로 한다.

제11조 다음에 “제3장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및 지원 활성화”를 삽입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외국인주민자문회의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동두천시 외국인주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자문회의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부터 제17조를 각각 제13조 부터 제18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동두천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6조(종전의 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20일을 동두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포함) 격려
 4. 그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

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장 위 순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민자치담당 최 경 자
	담당자 성명·전화	유 수 희 860-209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 안에 91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주민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p>제2조(용어의 정의)</p> <p>1.“외국인”이란 -----</p> <p>2.“외국인주민”이란 -----</p> <p>-----</p> <p>-----</p> <p>3.“외국인주민 가정”이란 -----</p> <p>-----</p> <p>-----</p> <p>4.“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p> <p>-----</p>
<p>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u>시장은</u>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외국인주민의지위) ① ----- ----- <u>않으면</u>----- ----- -----</p> <p>② <u>동두천시장은</u>(이하 “시장”이라 한다.)-----</p>
<p>제4조(시의 책무) ① (생 략) ② <u>시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여야 한다.</u></p> <p>③ (생 략)</p>	<p>제4조(시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4조의2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u></p> <p>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기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p> <p>② (생략)</p>	<p>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p> <p>7. -----</p> <p>-----</p> <p>② (현행과 같음)</p>
	제2장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p>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동두천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지원 업무 담당과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부서책임자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성공적인 정착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5.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외국인주민 업무 담당으로 한다. 	<p>제7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지원 업무 담당과장, 시의원,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자 2. 위촉직 위원 :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교수·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자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업무소관 담당으로 간사 1명을 둔다.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p> <p>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 3. (생략) <u><신설></u></p> <p>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p> <p>5.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시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 6. ----- 시장 또는 위원장 -----</p>
<p>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p>	<p>제9조(위원장) ①----- 협의회 ----- ②(현행과 같음)</p>
<p>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p> <p>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전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선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0조(회의) ①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p> <p>②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당 등)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 ----- -----수당, 여비 ----- -----.
	제3장 외국인주민 정책 참여 및 지원 활성화
<신 설>	제12조(외국인주민자문회의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주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동두천시 외국인주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생략)	제13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현행과 같음)
제13조(업무의 위탁) (생략)	제14조(업무의 위탁) (현행과 같음)

<p><u>제15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u>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p> <p>1. 시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p> <p>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p> <p>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동두천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p>	<p><u>제16조(세계인의 날)</u> ① 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알개우기 위해 매년 5월20일을 동두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 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1. 기념식 및 문화 예술체육행사</p> <p>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p> <p>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p> <p>4. 그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u>제16조(명예시민)</u> (생략)	<u>제17조(명예시민)</u> (현행과 같음)
<u>제17조(시행규칙)</u> (생략)	<u>제18조(시행규칙)</u> (현행과 같음)